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크로아티아 공화국(Republic of Croatia)
면적	56,594 km ² (자료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2017 기준)
수도	자그레브(Zagreb)
인구	4,105,493 명 (자료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2017 기준)
민족(인종)	크로아티아인(90.4%), 세르비아인(4.4%) 등
언어	크로아티아어(라틴문자 사용)
종교	가톨릭(86.3%), 세르비아정교(4.4%), 회교도(1.5%) 등
기후	◦ 아드리아해 연안 : 지중해성 기후 ◦ 북동부 지역 : 대륙성 기후
국가원수	◦ 대통령 :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Kolinda Grabar-Kitarovic) ◦ 총리 :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92-11-18 (자료원 : 주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1995-11-15	최혜국 대우를 통한 무역 증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협정	2001-01-16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협정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2001-06-16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2006-09-15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조세협약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분야 협력협정	2013-01-08	양국간 동 분야 상호관계 발전 및 협력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무역협정 종료	2013-09-12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2013-07-01)에 따라 기존 무역협정 종료	
한-EU FTA 크로아티아 추가의정서	2016-01-01	한-EU FTA를 크로아티아에게도 적용	
항공협정	2016-09-15	양국 항공사의 정기편 취항 및 항공사간 편명공유 허용	
한-EU 기본협정 크로아티아 추가의정서	2018-08-0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을 크로아티아에게도 적용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교민 수

200 명 (자료원 : 주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주한 크로아티아 상주대사관 개설 : 주한 크로아티아 상주대사관이 2018.10.24.(수)서울에 개설되었다. 2005년 우리 대사관이 자그레브에 개설된 이후 13년만에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이 개설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다.

○ 한-크로아티아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 해양수산부와 크로아티아 해양교통인프라부가 2018.9.10.(월)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양국은 자국 선박에 상대 국가의 해기사를 승선시킬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청년 해기사들이 크로아티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경제

○ 2018 한-크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과 크로아티아 경제부, 보건부, 크-한 비즈니스 클럽,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은 공동으로 9.19.(수)에 한-크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간 화장품 산업 분야 협력을 주제로 열린 동포럼은 올해로 개최 6년째를 맞았으며, 매년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 한-크로아티아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 양국 보건부는 2017.11.21.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젤코 플라조니치 크로아티아 보건부 차관의 'Medical Korea 2017' 참석 계기에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보건의료 및 관련 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문화

○ 2018 한국 영화주간 개최 :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은 2018년 10월, 자그레브와 리예카에서 한국 영화주간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동 영화주간 행사는 매년 한국의 상업/예술 영화를 크로아티아에 소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1,000명의 관객이 우리 영화를 관람했다.

○ 2018 K-pop 노래 및 댄스 경연 대회 개최 :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은 크로아티아 K-Pop 동호회(Chicats)와 공동으로 2018년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을 겸한 제5회 K-Pop 노래 및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에서 18개팀 52명이 참가하였으며, 약 300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0.09	2.4	3.54	2.92	2.63
명목GDP (십억\$)	57.68	49.52	51.64	54.76	59.97
1인당 GDP (PPP, \$)	21,240.41	22,160.71	23,361.84	24,748.56	26,215.92
정부부채 (% of GDP)	85.71	85.27	82.28	77.85	74.25
물가상승률 (%)	-0.22	-0.46	-1.13	1.13	1.6
실업률 (%)	19.28	17.07	14.96	12.43	12
수출액 (백만\$)	13,601.63	12,679	13,586.4	15,686.95	17,176.79
수입액 (백만\$)	22,406	20,343.12	21,603	24,281.52	28,072.81
무역수지 (백만\$)	-8,804.37	-7,664.12	-8,016.6	-8,594.57	-10,896.02
외환 보유고 (백만\$)	15,423.62	14,966.89	14,244.35	18,818.22	19,991.3
이자율 (%)	-	-	-	-	-
환율 (자국통화)	5.75	6.86	6.81	6.62	6.28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크로아티아 경제는 2015년부터 약 3%대의 경제성장세를 시현했다. EU가입 이후 높아진 EU권역내 접근성 및 세계경기회복으로 관광사업이 크게 부흥해 크로아티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민간소비가 최근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수출도 증가하는 등 경제지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또한 호텔, 교통 인프라 투자로 인해 고정자산 투자 역시 연 4%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성장세에 있는 크로아티아 경제의 불안요소는 서비스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인구유출 및 고령화이다. 크로아티아의 해외이주율은 14%에 달해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태로 인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고용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를 웃도는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몰타를 제외하면 EU 내 최고 수준으로 대외경제에 취약한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관광산업 다변화를 통해 여름철 해안가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분산시켜 관광산업 리스크를 해소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 전망

크로아티아는 민간소비심리 개선 및 관광산업, 건설인프라 호황으로 인해 당분간 2~3%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세제개편(부가세, 부동산거래세, 사회보장세) 추진을 통해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하고 내수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쉥겐조약 가입 및 유로존 가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쉥겐조약의 경우 2020년 가입이 예상되고 있어 물류, 투자 및 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8년 파산한 올라닉 조선소의 회생절차 진행여부는 크로아티아 경제의 불안요소이다. 올라닉 조선소의 총부채는 약 42.5억 쿠나에 달하며, 정부의 구제금융 투입규모에 따라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이탈리아	1,921,191,768
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641,109,669
3	슬로베니아	1,571,047,324
4	독일	1,548,656,067
5	오스트리아	842,623,706
6	세르비아	774,236,681
7	헝가리	479,095,734
8	러시아	365,275,195
9	프랑스	306,584,902
10	미국	291,613,422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이탈리아	1,717,489,090
2	슬로베니아	1,575,563,456
3	독일	1,452,601,728
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248,870,803
5	오스트리아	840,876,574
6	세르비아	701,323,480
7	헝가리	462,233,288
8	프랑스	301,650,004
9	미국	299,980,853

10	네덜란드	260,471,223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이탈리아	1,864,302,257
2	슬로베니아	1,703,664,312
3	독일	1,608,276,765
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249,798,399
5	오스트리아	873,564,267
6	세르비아	651,715,408
7	헝가리	523,075,391
8	미국	505,813,585
9	네덜란드	357,242,126
10	프랑스	320,070,711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이탈리아	2,140,701,201
2	독일	1,939,862,765
3	슬로베니아	1,688,932,173
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536,746,816
5	오스트리아	985,035,532
6	세르비아	833,592,696
7	미국	606,108,121
8	헝가리	523,931,289
9	프랑스	409,740,123
10	체코	278,081,16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463,093,478
2	이탈리아	3,262,535,802
3	슬로베니아	2,475,361,750
4	오스트리아	1,978,681,084
5	헝가리	1,500,124,933
6	러시아	1,158,132,583
7	네덜란드	787,778,492
8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618,217,070
9	중화인민공화국	588,802,220
10	폴란드	567,074,208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196,302,929
2	이탈리아	2,707,729,767
3	슬로베니아	2,194,719,134
4	오스트리아	1,881,679,359
5	헝가리	1,596,199,007
6	네덜란드	779,305,074
7	폴란드	579,441,647
8	중화인민공화국	578,390,765
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551,086,691
10	세르비아	484,986,429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517,263,800
2	이탈리아	2,754,215,102
3	슬로베니아	2,384,344,844
4	오스트리아	1,739,048,664

5	헝가리	1,551,403,967
6	네덜란드	856,217,109
7	폴란드	667,099,971
8	중화인민공화국	645,480,536
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636,945,703
10	세르비아	554,921,50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871,410,768
2	이탈리아	3,165,174,941
3	슬로베니아	2,625,720,877
4	헝가리	1,852,818,153
5	오스트리아	1,849,590,083
6	네덜란드	949,710,091
7	폴란드	857,864,347
8	중화인민공화국	777,789,766
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767,279,199
10	세르비아	668,090,948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697,805,252
2	271600	전기에너지	453,976,941
3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442,630,747
4	300490	기타	338,250,194
5	940190	부분품	238,712,836

6	850423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198,901,537
7	4407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151,231,110
8	440792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144,645,136
9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40,086,755
10	271121	천연가스	126,030,728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442,862,820
2	271600	전기에너지	417,968,682
3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375,383,893
4	300490	기타	347,428,088
5	940190	부분품	225,368,926
6	4205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156,670,010
7	890590	기타	142,712,199
8	850423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142,013,076
9	440792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138,958,661
10	4407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135,863,417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492,796,809
2	271019	기타	421,541,532
3	271600	전기에너지	416,851,833
4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322,153,291
5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318,463,936
6	850423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219,895,548
7	940190	부분품	212,526,732
8	170199	기타	163,226,202

9	4205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155,767,899
10	4407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154,058,399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649,286,307
2	300490	기타	576,025,720
3	300215	-	493,399,964
4	271600	전기에너지	474,388,158
5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412,807,358
6	850423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194,807,382
7	940190	부분품	187,433,747
8	4205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168,599,843
9	4407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159,796,025
10	854449	기타	157,236,693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1,418,780,310
2	271019	기타	1,339,185,704
3	271600	전기에너지	689,516,842
4	300490	기타	503,408,253
5	271121	천연가스	401,337,922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94,062,456
7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63,047,551
8	410712	그레인 스프릿	254,291,141
9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68,149,676

10	300210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9,997,714
----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932,441,409
2	271019	기타	803,537,403
3	271600	전기에너지	746,976,081
4	300490	기타	457,562,425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396,634,185
6	410712	그레인 스프릿	319,576,514
7	271121	천연가스	285,852,489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42,938,626
9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202,971,213
10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61,771,381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34,592,629
2	271600	전기에너지	670,214,995
3	271019	기타	651,931,784
4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552,638,344
5	300490	기타	516,432,409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503,097,520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73,760,223
8	410712	그레인 스프릿	261,488,280
9	271121	천연가스	258,893,444

10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129,761,178
----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97,180,044
2	271019	기타	863,576,050
3	271600	전기에너지	728,528,675
4	300490	기타	581,706,166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550,506,338
6	271121	천연가스	345,344,472
7	300215	-	294,685,978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64,850,710
9	410712	그레인 스프릿	251,625,409
10	9019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217,635,524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4	94	15	79
2015	300	10	290
2016	448	13	435
2017	328	16	312
2018	204	14	19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170	0	170
2	7411	승용차	12	0	11
3	2140	합성수지	10	0	10
4	6135	전기강판	3	0	3
5	6134	아연도강판	1	0	1
6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0	0	-1
7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	0	0
8	8147	의료용전자기기	2	0	1
9	4111	폴리에스테르섬유	1	0	1
10	3203	타이어	0	0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2262	의약품	143	0	143
2	7411	승용차	14	0	14
3	2140	합성수지	12	0	12
4	6135	전기강판	4	0	4
5	6134	아연도강판	4	0	4
6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2	0	2
7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	1	1
8	8147	의료용전자기기	1	0	1
9	4111	폴리에스테르섬유	1	0	1
10	3203	타이어	1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111	원동기	0	0	0
3	4411	편직제의류	0	1	-1
4	1290	기타비금속광물	0	0	-1
10	0156	식물성한약재	0	0	-1
6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	0	0
7	5142	취미오락기구	0	0	0
8	5212	신발	0	1	-1
9	8291	기타가정용전자	0	1	-1
2	8333	축전기	0	1	-2
5	8331	저항기	0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111	원동기	0	2	-2
3	4411	편직제의류	0	1	-1
4	1290	기타비금속광물	0	1	-1
10	0156	식물성한약재	0	1	-1

6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	1	1
7	5142	취미오락기구	0	1	-1
8	5212	신발	0	1	-1
9	8291	기타가정용전자	0	1	-1
2	8333	축전기	0	1	-1
5	8331	저항기	0	1	-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7.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비준 진행 중(2019년 발효 전 망)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2018.12월 양측 의회 비준 완 료 2019.2.1 발효 전망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비준 진행 중(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발효 전망)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 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 잠비크(2018.2.4))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 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A(Agreement)	페로제도	1996-12-06	1997-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2013.3.1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2014.4월 부로 보류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CU(Customs Union)	산마리노	1991-12-16	2002-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룸(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 콜롬비아(2013.8.1), 페루(2013.3.1), 에콰도르(2017.1.1)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 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8.1)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1) 과테말라(2013.12.1)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 2016.10월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3월,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월, EU- 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 2012년 4월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협상 : 2014.4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협상 : 2018.10월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협상 : 2017.2월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협상 : 2016.12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 2013년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 (MERCOSUR)	협상 중, 직전협상 : 2018.7월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2018.4.2. 무역부분 업그레이드 협정 원칙적합의(Agreement in principle) 도달	기존 협정 발효일 : 2000.10.1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2018.7월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중, 직전 협상: 2018.7월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협상중. 협상 개시 : 2013.11월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개시 : 2017.2월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무역부분 현대화 추진 중 (협상 개시 : 2017.11.16.)	기존 협정 발효일 : 2005.3.1
Update of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 2013.10.12)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기존 협정 발효일 : 1998.3.1

〈자료원 : EU 집행위〉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2~73류 일부	철강제품(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조사중)	2018-03-26
2	4811.90, 4809.90, 4816.90, 4823.90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반덤핑(규제중)	2016-02-18
3	7225.11, 7226.11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 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반덤핑(규제중)	2014-08-14
4	7312.10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9-08-12
5	2804.69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6-04-20
6	7307.93, 7307.99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반덤핑(규제중)	2001-06-0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2015년 9월, 유럽의회는 물개제품에 대한 교역 금지를 강화한다는 집행위 제안을 압도적 표결(찬성 631표, 반대 31표, 기권 33표)로 채택했다. 이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물개 잡이를 금지하고 물개고기에 관련된 제품 수입을 금지했었으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물개 잡이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 유지를 위한 물개 잡이만 허용해왔었다. 2014년 6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라는 WTO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5년 2월 물개 관련 제품의 수입교역 금지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물개잡이 역시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원주민의 전통생활 방식에 따른 비상업적 목적의 물개잡이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TBT를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삭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각 다른 국내 도로 인증

(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인증, REACH, CPNP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가 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0.1%
- 수은: 0.1%
- 육가크롬: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 카드뮴: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preparation)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article)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단량체, 또는 첨가제의 총량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첨가제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ECHA는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장품 제품 관련 규제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규정적용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18년 12월 기준 아직까지도 국내업체들 중에 CPNP에 대해 모르는 업체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역외 기업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역내 법적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자가 제품의 책임자가 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제품이 EU 현지 브랜드 또는 역내 유통사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통사가 책임자가 된다. 참고로 지정된 책임자는 제품 시장출시 전, EU 집행위 사전신고를 비롯해 불량제품 발생 시 시장철수 및 리콜 등 규정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책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국내 업체의 경우, 역내 책임자(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이 대행업체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하면 되는데, 필요서류로는 ISO 인증서 사본, 제품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등이 있다.

CPNP 인증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KOTRA 뉴스를 참고할 수 있다.

- CPNP 정보 링크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9902&pageViewType=&column=title&search=cpnp&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earchIndustryCatel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5) e-Mark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써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EMC는 시험에 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EU-28개국별로 달라지며 국가마다 별도의 코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코드는 아래와 같다.

-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벨기에, 7: 헝가리, 8: 체코, 9: 스페인,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13: 룩셈부르크, 17: 핀란드, 18: 덴마크, 19: 루마니아, 20: 폴란드, 21: 포르투갈, 23: 그리스, 24: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27: 슬로바키아, 29: 에스토니아, 32: 라트비아, 24: 불가리아, 36: 리투아니아, 49: 사이프러스, 50: 몰타

TBT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2017년 5월 2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비스페놀A(이하 BPA)의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를 기존의 0.1mg/l에서 0.04mg/l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해당 지침 부속서2의 부록C에 수정 기재되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의 이와 같은 장난감 안전지침 개정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EU는 지난 3월 27일 납(lead) 제한 기준 강화, 5월 4일 페놀(Phenol) 제한 기준 추가 등 장난감 성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 신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22일 Cadmium 허용치 조정
- 2013년 7월 17일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20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TCEP, TCPP, TDCP 함량 제한
- 2014년 6월 23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이행 제한 - 2015년 6월 30일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신 장난감 안전지침의 개정 공표 내역

- 2017년 3월 27일 Lead 허용치 조정(EU 이사회, 2017/738)
- 2017년 5월 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Phenol 제한(EU 이사회, 2017/774)
- 2017년 5월 2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허용치 조정(EU 집행위, 2017/898)

2)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위험성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등재시켰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15,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집행위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 및 컵은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는 바, 관련 기업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변경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S(BPS)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BPS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제조기업의 BPS 사용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8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표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에 있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1) 관세율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인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의 경우 한-EU FTA에 의거해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18년 12월 10일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s/rates/vat_rates_en.pdf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제품가치가 10달러 미만인 품목은 약식통관이 이뤄지며, 세금을 면제받는다.

2)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정식통관 품목은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개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25%)가 부과되며, 일부 특정 품목(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통관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관세 신고서
- 원산지 증명서
- 선적 서류
- 상업 송장
- 포장 목록
- 과세
- 측정서(필요 시)
- 보험 증서 (필요 시)
- VAT 지불 영수증

크로아티아의 경우 제품 수입 시,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축소신고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송금 확인서가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세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수출업체의 계좌에 더 많은 금액을 송부할 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적항에 화물이 도착 후, 선사에 따라 목적항에 7~14일 정도 보세지역에 무료 보관할 수 있으며, 도착일부터 1일씩 계산되고 통관 시 2~3일이 소요되므로 추가 비용을 고려해 보세지역 무료 보관 가능 기간 이내에 통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관세청은 수출통관절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웹사이트에서 관세행정 안내 → 수출 → '수출통관이란'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o 크로아티아 통관절차 흐름

운송(Transit) → 검역 및 역내처리(Inward Processing Under Suspension System) → 환급세제 및 역내처리(Inward Processing Under Drawback System) → 세관 보관(Customs Warehousing (five categories)) → 세관 검사장 처리(Processing Under Customs Control) → 가통관(Temporary Admission) → 역외 처리(Outward Processing) → 수출(Exportation)

3)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전시회 출품 등의 목적으로 들여와 다시 반출할 목적의 품목은 임시통관이 이뤄진다. 기본 임시통관 기간은 1개월이며, 1개월씩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 물품검사

수입 면장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한 후 세관에 제출 시 물품 검사 여부를 세관에서 결정한다. 물품 검사의 경우 대부분 수량에 대한 검사가 대부분이며, 검사 여부도 세관원의 판단에 따른다. 크로아티아 관세청에서 선정한 '과세 평가 대상'의 제품(주요 인증제도 참조)의 경우 물품 검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그 외의 경우는 문서상 축소신고 가능성이 있는 제품만 선별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진다. 통관 시 물품 검사를 할 경우 전체 통관 소요기간은 약 3일이 소요된다. 55개 항목의 제품은 국립 과세 평가 사무소에서 지정한 검사소에서 물품 검사 수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구의 경우 지정 검사소의 한 곳인 Sumarski Fakultet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 담당기관 연락처

- 자그레브대학교 임업대학(University of Zagreb Faculty of Forestry) [Sveučilište u Zagrebu]
- 주소: Svetosimunska cesta 25, 10 000 Zagreb, Croatia
- 전화: +385 1 2352 555
- 팩스 +385 1 2352 496
- 홈페이지: <http://sumfak.unizg.hr>

◦ 크로아티아 관세청 사이트

- <http://www.carina.gov.hr>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HZ Cargo

주소	Heinzelova 51, 10 000 Zagreb
전화번호	+385-1-4577-576
이메일	info@hzcargo.hr
홈페이지	http://www.hzcargo.hr/
비고	철도운송

◦ Lagermax Zagreb d.o.o.

주소	Zagorske Magistrale 14, 10 000 Zagreb
전화번호	+385-1-3340-450
이메일	lagermax@lagermax.hr
홈페이지	http://www.lagermax.hr

◦ DHL International d.o.o.

주소	Utinjska 40, 10 000 Zagreb
전화번호	+385-1-6397-503
이메일	info.hr@dhl.com
홈페이지	http://www.dhl.hr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령

◦ 크로아티아는 2000년 7월 투자진흥법(The Investment Promotion Law)을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본 투자 진흥법은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내국인과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있음.

- 제도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단독투자, 지분투자, 계약에 의한 합작투자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법인자격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배당금 또는 기업 청산 후 투자자본 과실송금을 100% 보장하고 있음.

◦ 2006년에는 투자인센티브법(Investment Incentive Act)을 도입하고 2009년에도 건설조건법(Terms of Construction Act)을 통해 투자유인을 규정해왔으나, 이 두 법 모두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 2012년 9월에는 기존 투자진흥법 및 투자인센티브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투자진흥과 투자환경개선에 관한 법률(Investment Promotion and Enhancement of Investment Environment)을 발표하였음.

- 제조업, 기술혁신분야, 비즈니스 지원 분야,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장비, 기술을 도입하거나, 고용을 확대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거나, 제품생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임.

◦ 2013년 11월 14일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법'(the Act on Strategic Investments of the Republic of Croatia)을 새롭게 발효하였음.

- 크로아티아의 전략적 투자법의 도입취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가 보유재산의 처리 및 행정절차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는 것임.

- 분야별로도 에너지, 관광, 교통, 통신, 환경보호, 농업 및 각종 사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단순 제조업 투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성 투자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임.

- 최소 투자규모는 전체적으로 2,000만 유로로 정해져 있으며, EU 펀드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가 1,000만 유로, 그리고 도서 지역 관련 프로젝트나 농업업 분야에서는 300만 유로의 최저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 동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특정 투자 사안에 대해서 전략적 투자자로 지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에서는 동 자격 부여에 국내와 해외투자가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는 기존 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할 경우 위와 같은 추가적인 법령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점에 있음.

2) 법인 설립 절차

◦ 외국인 직접 투자 서비스: HITRO.hr

- 크로아티아 법인설립은 크로아티아 전국에 60개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한 기업지원센터(HITRO)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

- HITRO에서는 신청 후 8일 이내에 회사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고,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함.

- HITRO HR서비스: FINA(Croatian Financial Agency)와 연계하여 기업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신속한 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크로아티아 전자정부추진사업의 하나임. 특히 외국투자기업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업등록기간이 4일로 단축될 수 있다고 함.

· (HITRO TR서비스 사이트: <http://www.hitro.hr/Default.aspx?sec=18>)

○ 법인 설립 절차 6단계

- 회사명 등록가능 여부 확인 : 기업지원센터(HITRO)에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명의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
- 서류 공증 : 공증 사무소로부터 회사설립 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
- 법원 등록 서류 제출 : 법인등록신청서 및 모든 관련서류를 HITRO에 제출
- 수입인지 및 등록 공고 비용으로 60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회사 등록 및 법인등록 번호(OIB) 발급
- 회사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 법원 등록 이후 회사 인증(Company Seal)을 별도로 만들며, 업종 분류까지 처리되면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동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 국제청 등록 : 법인세, 부가세 납부를 위한 회사 등록
- 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 : 연금 및 의료보험 공단에 직원 등록 및 가입, 외국인의 경우 거주 허가서가 필요함.

투자인센티브

1) 법인세 감면

크로아티아의 법인세율은 18%이나, 투자금액 및 일자리 창출에 따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감면 법인세율 50%(감면기간 10년, 단, 소기업은 5년)
 - 투자금액 : 15만~100만 유로 이하
 - 단, 소기업 및 ICT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센터에 한해 5만 유로~100만 유로 이하
 - 신규 창출 일자리 : 5명(중소기업 3년, 대기업은 5년 이상 고용해야 함)
 - 단, 소기업(3) ICT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센터(10) 적용
- 감면 법인세율 75%(감면기간 10년)
 - 투자금액 : 100만~300만 유로
 - 신규 창출 일자리 : 10명(중소기업 3년, 대기업은 5년 이상 고용해야 함)
- 감면 법인세율 100%(감면기간 10년)
 - 투자금액 : 300만 유로 이상
 - 신규 창출 일자리 : 15명(중소기업 3년, 대기업은 5년 이상 고용해야 함)

2)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은 소재지역(카운티) 실업률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실업률 20% 초과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실업자로 등록된 자 혹은 25세 미만 청년에게 첫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적격) 투자비용의 30% 혹은 최대 9,000유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러한 부류의 근로자가 아닐 경우 보조금은 12% 혹은 최대 3,600유로) 만약 동 투자가 개발 및 혁신센터, 혹은 고부가가치 투자일 경우 고용보조금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3) R&D 지원 인센티브

크로아티아 산업분야의 R&D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R&D 및 교육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마련됐다.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고용인의 임금,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용, 특허 및 라이선스의 감가상각비 등의 내용에 대해 지원된다. 또한 추가 수익세는 적격비용의 국고보조금 지원 최대한도까지 감면된다.

- 기초연구

- 국고보조금 적격비용 지원비율 : 100%
- 프로젝트 당 총 지원금액 : 300,000유로
- 기업의 최대한도액 40,000,000유로
- 추가 수익세 감면 : 200%

○ 산업연구

- 국고보조금 적격비용 지원비율 : 50%(최대 80%까지)
- 프로젝트 당 총 지원금액 : 200,000유로
- 기업의 최대한도액 20,000,000유로
- 추가 수익세 감면 : 150%

○ 실험개발

- 국고보조금 적격비용 지원비율 : 25%(최대 80%까지)
- 프로젝트 당 총 지원금액 : 100,000유로
- 기업의 최대한도액 15,000,000유로
- 추가 수익세 감면 : 125%

○ 응용연구 기술 타당성

- 기업규모 : 대기업
- 국고보조금 적격비용 지원비율 : 50%
- 프로젝트 당 총 지원금액 : 50,000유로
- 기업의 최대한도액 7,500,000유로
- 추가 수익세 감면 : 150%

4) 투자장려분야

- 기술 혁신 및 개발, 연구 분야
- 높은 고용 및 종업원 교육
- 영업 활동의 현대화 및 개선
- 높은 가공 처리 비율로 인한 생산 증가
- 수출 증가
- 경제 성장과 고용이 전국 평균에 미달인 지역에 투자해 경제 활동 촉진
- 물류, ICT, 콜센터 등 전략적 서비스 지원 분야
- 에너지 보존
- 정보기술(IT)의 개발
- 외국 재정기관과의 협력
- 크로아티아 경제를 EU 기준에 부합되게 하는 경우

5) 과실송금

크로아티아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과실송금을 100% 보장하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투자 제한 및 투자 금지 분야는 없다. 크로아티아에 설립, 등록된 크로아티아 법인은 외국인 지분율에 관계없이 법인 명의로 크로아티아 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 및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 자격일 경우, 부동산을 구매·소유할 수 없다.

무기 및 군사장비, 철도 및 항공운송, 통신 및 체신, 출판 및 방송언론 분야는 100% 단독투자를 불허하고 합작투자만 가능하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별로 최저 설립자본금을 설정해 투자 금액을 규제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 자연인과 법인은 크로아티아 내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이 가능하나,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산업특구

산업특구란 크로아티아 정부, 지자체 혹은 일반 민간 소유의 부지로 비즈니스 및 산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약 300개의 산업특구가 존재하며 작게는 수만에서 크게는 수백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등 형태와 입지조건도 매우 다양하다.

적어도 이들 산업특구의 경우 토지소유 문제와 관련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고, 상하수도, 전력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 입주시 이들 구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 지역에 입주할 때는 정부, 지자체 등을 접촉해 어떠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클러스터 조성

크로아티아 경제부는 산업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클러스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5월 기준, 전국적으로 흩어진 12개의 경쟁클러스터(Competitive Cluster)가 구성돼 있으며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식품가공 클러스터(Food Processing Industry)
- 목재가공 클러스터(Wood Processing Industry)
- 자동차부품 클러스터(Automotive Industry)
- 창의/문화 산업 클러스터(Creative and Cultural Industry)
- 섬유/피혁/신발 클러스터(Textile, Leather Goods and Footwear Industry)
- 방위산업 클러스터(Defence Industry)
- 건설산업 클러스터(Construction Industry)
- 전기/기계 클러스터(Electrical and Mechanical Machinery Industry & Technology)
- 의료산업 클러스터(Medical Industry)
- 화학, 플라스틱 고무 클러스터(Chemical, Plastics, and Rubber)
- ICT 클러스터(ICT Industry)
- 해양산업 클러스터(Maritime Industry)

향후 크로아티아에 조성된 클러스터가 활기를 띠고 정상궤도에 오를 경우, 외국 클러스터와의 협력도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 투자가로서는 투자 지역 선정 시 개발된 클러스터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자유무역지대

- Port of Rijeka Free Zone : www.portauthority.hr
- Kukuljanovo Free Zone : www.ind-zone.hr
- Osijek Free Zone : www.szo.hr
- Free Zone of Port of Ploče : www.port-authority-ploce.hr
- Port of Split Free Zone : <https://portsplit.hr/en/port-of-split/free-zone/>

산업단지

◦ Business Park Dalmatia

규모	323,622㎡
위치	Dugopolje
임차료	프로젝트별로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 Dugopolje Projekt Ltd - 담당자 : Boris Petric - 연락처 : +385-91-569-9684 - 이메일 : boris.petric@poseidon-gp.com

◦ Industrial Park Nova Gradiska

규모	800,000㎡
위치	Trg kralja Tomislava 1, 35400 Nova Gradiska
임차료	25쿠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Indestrial Park Nova Gradiska Ltd - 담당자: Ivana Voncina Toplek - 연락처 : +385-3838-9910 - 이메일 : info@ipng.hr

◦ Business Zone Zlatar Bistrica

규모	297,000㎡
위치	Zlatar Bistrica
임차료	평당 약 15쿠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Zlatar-Bistrica - 연락처 : +385-49-467-073 - 이메일 : opcina.zlatar.bistrica@kr.t-com.hr

〈자료원 : 크로아티아 투자유치청(AIK)〉

주요 지역별 여건

◦ 부코바르-스리엠(Vukovar-Srijem County)

- 면적 : 2,448km²
- 인구 : 165,799명
- 주도 : 부코바르(Vukovar)
- 기후 : 대륙성 기후
- 비고 : 범유럽수송망(Pan-European Corridor X 고속도로 및 철도 및 VII 다누베 강항) 통과
- 주요 산업 : 식품공업(41.6%) 제조업(13.9%), 목재업(13%) (상공회의소, 2018년 최신 자료)
- 주요 기업 : Same Deutz-Fahr zetelice Ltd. Zupanja, Nexus Ltd. Cerna, Adriatica Dunav Ltd. Vukovar 등

◦ 비로비티차-포드라비나(Virovitica-Podravina County)

- 면적 : 2,022km²
- 인구 : 79,111명
- 주도 : 비로비티차(Virovitica)
- 기후 : 대륙성 기후
- 비고 : 범유럽수송망(Pan-European Corridor X 고속도로 및 Ⅷ 드라바 강항) 통과
- 주요 산업 : 제조업(40.5%), 유통업(20.6%), 농업·어업·목축업(17.2%) (상공회의소, 2018년 최신 자료)
- 주요 기업 : TVIN Ltd., Pan Parket Ltd, Contorte Ltd. 등

○ 메디무르예(Medimurje County)

- 면적 : 729km²
- 인구 : 112,089명
- 주도 : 차코베츠(Cakovec)
- 기후 : 대륙성 기후
- 주요 산업 : 제조업(53.9%), 유통업(22%), 건설업(9%) (상공회의소, 2018년 최신 자료)
- 주요 기업 : EKO Medimurje Plc., LTH Alucast Ltd., Tehnix Ltd. 등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957.95	2,877.22	267.36	1,756.36	2,104.25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167.83	1,962.4	8.24	-337.45	643.62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	4	5	155	5	434
2015	1	0	50	0	0
2018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숙박 및 음식점업	3	4	119	4	39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1	36	1	3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숙박 및 음식점업	1	0	5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운수 및 창고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삼성전자(주) 오스트리아법인 자그레브 지사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가전, 핸드폰 유통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자료원 : 삼성전자(주) 오스트리아법인 자그레브 지사>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유한책임회사(d.o.o.), 주식회사(d.d.) 등을 세울 경우 출자금액 안에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진다. 법인은 현지 상법상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체이며, 따라서 조세 당국과의 마찰이 비교적 적고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시장 상황에 맞게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경영 의사의 신속성, 효율성 면에서 지사를 앞선다. 현지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단순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개인사업자가 있다.

지사

크로아티아 법에 따라, 외국 회사와 개인 사업자는 크로아티아에서 지점을 설립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 회사가 설립한 지점과 운영은 국내회사에 의해 설립된 지점 설립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점은 법인이 아니지만 지점이 부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고, 설립자는 부채 및 운영에 관한 아무런 책임과 권리를 갖지 않는다.

설립자는 모든 자료의 변경사항을 등록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같은 설립자가 여러 개의 지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설립절차는 각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등록지원서에 어떤 지점을 설립하려는지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등록자는 여러 지점에 동일인 또는 각 지점마다 다른 대표를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점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점이 독립적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들을 갖고 있지 않고, 설립자가 법적으로 지사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갖고 있다. 타사와 분쟁 시 지점은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지점을 소유한 회사 혹은 개인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점은 크로아티아 회계법, 국제 회계기준 및 조세 규정에 따라 사업 관련 모든 장부를 비치, 보관할 의무가 있다.

○ 설립절차

- 지사 설립에 대한 신청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회사명, 설립 본사, 지사의 모기업
 - 설립회사의 사업목적과 지사의 활동내용
 - 자본금 및 주식가치(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주주명부
 - 지사에 파견된 직원의 이름
- 본사의 주소와 함께 관할 법정등록사무소에서 지사등록을 해야 함.
- 신청서와는 별개로 아래의 문서들을 자국 언어와 크로아티아어로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 모기업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서류, 법정 서식, 모기업 설립 시기
 - 지사 설립에 관한 모기업의 결정서류
 - 모기업의 본부 소재지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는 회사 설립에 관한 증빙서(공공계약 및 회사법령) 공증서류
 - 모기업의 이전 사업연도 재무보고 요약본

연락사무소

하나의 법인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된 목적은 시장조사, 모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에 한정되고, 영업활동 등은 할 수 없다(특히, 외국항공사의 대표사무소는 국제협회의 국제 조약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음). 또한 대표사무소 자체의 책임은 없고 궁극적인 영업책임은 모기업이 부담한다. 외국단체, 국가 혹은 국제기관은 크로아티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대표사무소는 Foreign Party Representative Registry(with the Ministry of Economy)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 설립절차

- 신청서의 등록은 외국의 계약 당사자 혹은 공인된 대표에 의해 제출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기업명, 본사 및 창립자의 기업 활동
 - 주 크로아티아 대표사무소의 모기업
 - 대표사무소 활동의 책임을 위한 기본 정보(이름, 거주지, 크로아티아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일 경우 여권과 그것을 발행한 국가)
 - 대표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설명
 - 대표사무소의 책임자 임명에 대한 결의(이사)
- 신청서와는 별개로 아래의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함.
 -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한 창립자의 결의
 - 출신국가등록소의 외국인 등록 서류 혹은 모기업 본사 소재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는 회사 설립에 관한 유효 서류(법정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 회사의 설립시기가 명확히 서류에 기재되어야 함)
 - 조세납부증빙
 - * 문서는 원어와 크로아티아어 공증서류 모두 필요
 - * 크로아티아 경제부는 신청서와 서류가 제출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대표사무소 등록을 마치게 됨.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후 EU국가 출신 대표사무소 설립자는 대표사무소가 경제부의 외국인단체 대표 등록소(Foreign Party Representative Register of the Ministry of Economy)에 등록되어 있고, 크로아티아에서 계속 사업을 지속해나가려고 할 경우 대표사무소를 지사 혹은 법인으로 변경해야 함.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크로아티아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동일한 개념이며, 기업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되며 주식의 소유자는 소유한 지분 이외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이다.

-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현지화 HRK 200,000(EUR 26,670)에 상당하는 금액임.
- 주식 발행을 위해 자본금을 납부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액의 25%를 법원 등록 전에 납부(최소 자본금 납입)하여야 하고, 주식액면가는 최저 HRK 10이상이어야 함.
- 기업명 다음에는 기업 형태가 주식회사임을 나타내는 d.d.가 붙음.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주는 참여 지분을 한도로 책임을 지지만 지분은 주식으로 표시되지 않음.
- 최소자본금은 현지화 HRK 20,000(EUR 2,700)에 상당하는 금액임.
- 최소 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HRK 10,000(EUR 1,350)가 법원 등록 전에 납부되어야 함.
- 주주1인의 최소 지분은 HRK 200 이상이어야 함.
- 기업명 다음에는 기업 형태가 법인 형태를 나타내는 d.o.o.가 붙음.

○ 단순유한책임회사

- 3명 미만의 주주와 한명의 이사회 멤버로 구성되는 회사는 간단하게 단순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설립 최소자본금은 HRK 10이며, 법원 등록 전에 자본금이 전부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함.
- 기업명 다음에는 유한책임회사를 뜻하는 J.d.o.o.가 붙음.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직능별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연인을 뜻하며, 자연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 법원에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연간 총 수입이 HRK 2,000,000을 초과하는 장인(기능인)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연간 총수입이 HRK 15,000,000를 초과하는 장인(기능인)은 반드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합명회사

크로아티아 합명회사는 한국의 합명회사와 동일하게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데에서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시되고, 사원의 책임 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원의 기업 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 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띄게 된다. 또한, 출자 관련 재산 출자에 한하지 아니하며 노무 출자나 재산 출자도 허용된다.

- 신청서 작성 시 필요자료
 - 회사명, 등록된 사무실, 사업활동
 - 파트너(이름, 거주지 즉 회사 이름 및 등록된 각 파트너 사무실 주소)
 - 책임자 임명과 권한 승인서
 - 법적 고지 및 조직 형태
 - 정관 채택 일자
 - 회사 해산 이유
- 신청 시 필요서류
 - 정관 공증
 - 파트너 목록 공증
 - 세금관리, 크로아티아 의료연금관리공단 인증 서류
 - 설립자가 연 모든 계좌의 정보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 공증

합자회사

크로아티아 합자회사는 한국의 합자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무한책임 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 채권자에 대해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해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는 다르다. 유한책임 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 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 진행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자료 및 서류는 합명회사와 같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Law Firm Kallay &Partneri d.o.o.

전화번호	+385-1-4811-959
주소	Ilica 1A/III,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www.kallay-partneri.hr/en/
이메일	info@kallay-partneri.h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Law Firm Kunstek/Halle/Simac

전화번호	+385-1-6935-600
주소	Ilica 31,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www.khs.hr/en/
이메일	office@khs.h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KPMG Croatia d.o.o.

전화번호	+385-1-5390-000
주소	Eurotower, Ivana Lucica 2s/17, 10000 Zagreb
홈페이지	https://home.kpmg.com/hr/en/home/misc/contact-kpmg.html
이메일	info@kpmg.h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EY Croatia

전화번호	+385-1-5800-800
주소	Radnicka cesta 50, 10000 Zagreb
홈페이지	https://www.ey.com/hr/en
이메일	ey@hr.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자료원 : 회계법인 검색(<http://www.knjigovodstveni-servisi.net/>), 법무법인 검색(<http://www.hok-cba.hr/hr/imenik>)>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개요

청산 혹은 철수는 기업의 존재를 끝내는 법률적 절차로, 한 회사 생명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 법적 근거

- 크로아티아 회사법은 존속하는 회사를 끝내는 근거 및 회사 청산 절차를 규정하며, 회사 청산 절차는 회사의 유형별로 상이함.
- 회사 유형에 따라서 회사의 도산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회사가 설정한 기간의 만료, 법원 명령, 회사 주주들의 특별 결의, 채권자들의 특정 행동 등이 있음.

○ 청산의 목적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업무를 종결
- 이익관계자들의 요청을 수집
- 회사 자산의 재배치
- 파악된 자산에서 빚을 청산하고 여분의 자산을 회사 구성원에 배분
- 여분의 자산을 배분할 때는 각각의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배분하거나, 구성원 간의 합의 하에 혹은 회사의 법인서류에 근거
- 최종적으로 상업 법정 등기소에서 회사 등록이 말소되면 회사의 존속이 중단됨.

○ 청산방법

- 기업의 청산은 회사의 주주가 지정하거나 법원에 의해 지정된 대표청산인 혹은 여러 명의 청산인을 통해서 수행
- 위와 같이 청산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업무를 종결시키며 회사의 자산을 파악해서 남은 자금을 주주들에게 배분
- 만약 기업의 임원들이 청산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권한은 청산인이 지정되는 순간 종료

2)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의 청산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의 등록 말소 결정이 법원 등기소에서 나고 나면,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 명칭에 “청산 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도록 변경된다. 또한, 청산인은 청산재무제표 및 기업현황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조세 당국에 회사의 청산절차를 보고해야 한다.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법적근거 제출

- 법원 등기소에 회사존속 중지 서류 제출해야 하며, 청산이 결정되면 크로아티아 관보에 게재해야 함(“Narodne Novine”).
-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요 임원(내부구성원)들이 회사 청산을 실행하는데, 회사의 주주가 임원(내부구성원)대신 별도의 청산인을 지정하게 되면, 청산인이 법원과 크로아티아 통계청에 청산을 위한 책임자로 등록됨.

○ 관보 게재

- 채권자들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회사는 크로아티아 관보에 회사 청산 결정 공표를 15~30일 간격으로 세 번 해야 함.
- 가까운 채권자(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에게는 청산 과정에 대해서 별도의 고지를 해야 하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또한 채권자들은 관보에 마지막으로 공표가 실린지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주장해야 함.

○ 청산과정 보고 및 빚 배분방법 결정

- 회사의 빚을 청산하고 나면, 청산인은 청산 과정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고, 회사 구성원들에게 남은 자금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해야 함.

- 또한, 부채가 정리된 후에는 이사회가 청산 과정의 보고를 받고, 제안된 여유 자금 배분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림.

○ 자금 배분

- 빚 청산 이후에 남은 자금은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배분되며, 기한은 관보에 3번째 청산고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임.

-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담보물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만 남은 기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할 수 있음.

- 이사회가 회사 청산에 대한 청산인의 보고 및 남은 자금의 배분에 대한 승낙을 한 후 30일 이내에 청산인은 회사 정관의 조항에 따라서 남은 자금을 회사 구성원에게 배분

- 모든 주식이 동일한 권한을 가질 경우에는 남은 자금은 구성원 각자의 회사 지분에 근거해 배분됨.

○ 이사회 청산 보고

- 남은 자금을 회사 구성원에게 분배한 후, 청산인은 회사 이사회에 최종 청산 재무제표 및 청산 보고서를 제출

○ 법원등록 삭제 요청

- 이사회가 청산보고 서류를 승인하게 되면 청산인은 법원등록소에 회사의 등록기록 삭제 요청을 함.

- 이때 회사의 이사회가 청산 재무제표를 승인했다는 결정사항을 동봉

- 회사는 조세당국으로부터 부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납세필증을 받아야 하며 법원등록소에 회사등록 삭제 신청시 제출해야 함.

○ 청산 후 손해배상 요구

- 법원등록소에서 회사가 삭제 완료되면 채권자는 청산인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나, 채권자는 청산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3) 유한책임회사 청산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의 근거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한 책임회사의 청산에도 적용된다.

4) 합자회사 청산

합자회사를 청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발생하면, 일반 합자 회사가 파산 소송 절차를 밟지 않는 한, 합자회사를 청산할 수 있다. 일반 합자회사의 구성원에 의해 달리 결정된 사항이 없거나, 회사 정관에 따로 규정되지 않으면 합자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청산을 수행한다.

청산인의 업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업무를 종결시키며, 합자회사의 자산을 파악 및 수집하여 채무를 이행하고, 남은 자금을 일반합자회사의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청산인은 청산절차의 처음과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법적근거 제출

- 일반 합자회사의 청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원 등기소에 등록되면, 제3자가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자회사의 이름은 "청산 중" 단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자금 배분

- 빚이 청산되고 나면 청산인은 남은 자금을 각각의 보유 주식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분

- 남은 자금을 분배할 때 회사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청산인은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분배를 연기해야 함.

○ 법원등록 삭제 신청

- 청산 절차가 종료되고 나면 청산인은 법원에 합자회사의 법원등록을 삭제시키는 신청서를 낸.

○ 법원 결의안 발의

- 법원 등기소에서 합자 회사 등록 말소 결의가 발의되고 나면 회사의 존속이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
- 합자 회사의 모든 기록 및 장부는 법원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함.

5) 지사 청산

회사법상 지사는 법인이 아니며, 지사의 권리와 채무는 모회사에 귀속된다.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 청산근거

- 회사의 설립자가 지사 종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
- 모회사가 등록 소재지인 국가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시

○ 지사 종결 결정 : 지사의 설립자가 지사의 종결에 대한 결정을 내림

○ 지사 청산 신청 : 지사 등록 말소에 대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 결의안 발의 : 그 후 법원은 지사 등록 말소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함.

- 회사법에는 지사 청산 이전에 법원 등기소에서 지사의 회사 등록 말소를 선행해야 한다는 법적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6) 대표사무소 청산

대표사무소는 경제부의 결의를 근거로 등록소에서 말소되며 경제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표사무소의 등록 말소 결의안을 발표할 수 있다. 등기소에서 등록말소를 하는 것에 선행하는 공식적인 청산 절차는 없다.

- 설립자가 대표사무소의 종결에 대해 결정을 내렸을 경우
- 모회사가 본국에서 존속을 중단할 경우
- 대표사무소가 크로아티아 법에 위배되는 사업을 행하였을 경우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US\$1 = HRK 6.54(2018년 12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3.6
비고	크로아티아는 초임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전체 평균임금은 약 1,300달러/월이다.				

<자료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1) 필수사항

고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고용계약이 업무 시작일 이전에 합의되었다는 계약체결확인서를 서면으로 피고용인에게 제공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으며, 피고용인은 이를 통해 법적으로 고용계약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근무 시작 당일까지 서면으로 근무계약서나 계약체결 확인서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고용계약이 무기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계약 체결 시 고용주는 신규 피고용인을 크로아티아 연금보험(HZMO)과 크로아티아 건강보험(HZZO)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다. 고용 시작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크로아티아 연금보험(HZMO)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금보험에서 처리된 정보는 자동으로 크로아티아 건강보험에 등록된다.

고용계약서는 다음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 단체명, 단체 소재지 및 본사
- 작업장, 고정 작업장이 없을 경우 업무가 다양한 장소에서 시행된다는 것을 명기
- 직무설명서에 직위, 직책 및 직장의 성격 명기
- 업무 시작일
- 계약직 고용일 경우 계약의 예상 지속 기간
- 계약 체결 시 혹은 계약확정서 발행 시 고용인의 유급휴가 존속기간 및 휴가 기간 결정 방법
- 계약체결 시 혹은 계약확정서 발행 시 고용주와 고용인의 고용계약 종료 통지기간 준수와 해고 통지 기간 결정 방법
- 피고용인의 기본 급여, 추가 수당 및 지급 규정
- 일일 혹은 주간 근무 기간 (상근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계절성 직무 또는 개별 지정 작업장에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 고용계약에 대한 법률적 추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수습제도

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이 명시 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피고용인의 직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과의 고용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단, 이때 직무능력 부족에 대한 전후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며, 동 수습기간 내에는 최소 1주일 전의 통지로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특수교육 및 특별훈련이 필요한 신규 피고용인에 대해 수습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수습직원의 고용 계약은 지정된 기간에 한해서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수습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혹은 여타 규정에 의해 특정한 직업에 적능시험 혹은 근무 경력이 채용 기준의 선행조건일 경우, 고용주는 교육을 받았거나 시험을 통과한 자를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무급 인턴십”으로 채용할 수 있다. 무급인턴십의 지속 기간은 해당 직업의 최대 수습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계약 체결 및 해지,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용법률에 관한 모든사항이 인턴십에도 적용된다.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초과 근무시간은 1주일에 최대 8시간 및 1년에 10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상 별도로 명기된 사항이 없을 시에는 6시간 근무마다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속적인 근무일 사이에 노동자는 12시간의 휴식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크로아티아 노동법에 명시된 초과근무수당 지급률은 없으며 개별 고용 계약, 대기업의 경우, 노사단체 협상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명시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현지관례로는 초과근무수당은 50%,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시에는 30-40%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한다.

휴가

1) 연차

연속 6개월 이상 근무 시 연간 기본 휴가는 4주(20일)이며 기타 개인 중대사, 경조사(결혼, 자녀 출산, 가족 사망 등) 등의 이유로 최대 연간 7일간 의 휴가를 추가로 가질 수 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합의하지 않는 한, 1년에 최소 한 번은 2주 이상 연속해서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잔여휴가는 이월할 수 있으면 차년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2) 병가

유급 병가는 연 42일이며 43일 이상은 건강보험기금(HZZO)에서 기업에게 환급한다. 장애인 직원의 병가는 7일까지 유급병가이며 8일 이상은 건강보험기금에서 환급한다. 병가 수당은 고용계약 및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하며, 최소 수당은 직전 6개월 평균급여의 70%이다.

해고

고용 계약의 종료는 아래 사유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근로자의 사망
- 임시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
- 65세에 이르고 2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
- 불구로 인한 강제 퇴직
- 당사자 간의 합의
- 해고
- 법원의 판결

고용 계약의 취소는 아래 사유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경제, 기술, 조직상의 이유로 해당 직무 수행이 불필요해진 경우(이 경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직무 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 불가)
- 근로자가 자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따른 최소 고용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 최소 2주일 전에 통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
- 최소 1개월 전에 통지: 근무 기간이 1년부터 2년 미만 근무
- 최소 1개월 2주일 전에 통지: 근무 기간이 2년부터 5년 미만
- 최소 2개월 전에 통지: 근무 기간이 5년부터 10년 미만
- 최소 2개월 2주일 전에 통지: 근무 기간이 10년부터 20년 미만
- 최소 3개월 전에 통지: 근무 기간이 20년 이상 시

퇴직금

크로아티아에는 법정 퇴직금 제도는 없다. 단,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자진사직 등은 해당 사항 없음) 해고일 기준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한 달 급여의 1/3을 Severance Pay(전별금)라는 명목으로 급여의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외의 퇴직금은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세로 대체된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기업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을 시켜야 하며, 노동자 급여의 16.5%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를 고용주세로 매월 납부해야 한다(2019년 1월 개정).

고용보험

2019년 1월부터 사회보장제도가 개편되어, 의무고용보험이 폐지되었다. 이전에는 노동자 급여의 1.7%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고용주세로 매월 납부해야 했다.

산재보험

2019년 1월부터 사회보장제도가 개편되어, 의무산재보험은 폐지되었다. 이전에는 노동자 급여의 0.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고용주세로 매월 납부해야 했다.

국민연금

노동자는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연금납무액은 세대간 연대 연금(15%)과 개인 저축자본 의무연금(5%)를 더해서 총 급여의 20%이다.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 크로아티아의 법인세는 기본 법인세는 18%이며, 연수익 3백만 쿠나(약 46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는 12%로 감면된다.
- 원천징수 법인세는 15%이나, 3백만 쿠나 이하의 배당금 및 이윤배분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피난처 또는 금융 센터로 간주되는 지역에 본사나 기업운영권을 가진 모기업을 가진 개인이나 회사에게 지불하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는 20%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단, EU 회원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이다.
- 접대비의 50%는 법인세 대상에서 공제된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24%와 36% 두 구간으로 차등부과한다.
 - 24% : 연 210,000쿠나 혹은 월 17,500쿠나
 - 36% : 초과액에 대해 36%이 적용된다.
- 기본적으로 연 45,600쿠나 혹은 월 3,800쿠나가 소득공제되며,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올라간다.
-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총 납부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가 산정된다.

부가가치세

- 기본 부가가치세는 25%이다.
- 빵, 우유, 책, 의약품, 의료기기, 신문·잡지 등의 부가세는 5%로 감면된다.
- 숙박임,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쓰레기 수거 등), 유아식, 애견식품 등의 부가세는 13%로 감면된다.
 -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9년부터 부가세 13% 부과 대상품목을 확대한다.
 - 추가품목 : 기저귀, 생선, 고기, 게, 조개류, 야채, 과일 및 견과류, 달걀 등
- 크로아티아 정부는 부가세의 24% 인하를 추진 중에 있으나, 세수부족으로 인해 수차례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 2018년 12월 기준, 부가세의 24% 인하는 2020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소비세

- 에너지 제품, 전기, 담배·술, 주류 등의 품목에 대해 소비세가 부과된다.
- 커피, 음료수, 자동차,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서 특별세가 부과된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크로아티아는 공식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EU에 가입하면 유로존 국가와의 상품,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 유로화에 대한 쿠나화의 가치 안정은 크로아티아 외환제도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외환 시장에 개입해 쿠나와-유로화 환율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실상 유로화에 대한 준-페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외국인 및 법인은 국내 은행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크로아티아 국민 역시 해외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하는 데에 제약이 없다. 크로아티아 외환관리정책의 기본법은 외환법(The Foreign Exchange Act)으로, 영문 번역본(비공식)은 크로아티아 중앙은행(Hrvatska Narodna Banka)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외환 규제

해외 송금 및 해외 자금조달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어 자유로이 무제한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크로아티아 인구는 약 410만명(2017년 12월 기준)이며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약 25.6%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청년층의 EU 내 타 국가로의 이주 수요가 노령화를 가속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료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소비 성향

크로아티아인들은 전반적으로 과시적 성향이 강하고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경제 수준에 비해 과소비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 위기와 맞물려 이러한 과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의 10%만이 경제위기 이전의 소비패턴을 보이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제품 가격 변화에 민감하고 할인 등을 살피 구매하고 있다.

특히 대량 판매를 통해 가격 절감이 가능한 대형 유통 체인점으로 소비자들이 몰리는 양상을 보인다.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대형 유통체인들(KONZUM, Metro, Lidl, Mercator 등)의 매출액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나, 고가의 소비재를 취급하는 City Center 1, King Cross, West Gate 등의 쇼핑몰은 매출액 감소뿐만 아니라 방문객 수 자체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형 유통 체인들의 가성비 좋은 PL(Private Label)의 수요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주요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평균 2개의 지불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국립은행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비접촉식 지불카드가 18.3%, 일반 카드 이용은 3% 감소했다.

크로아티아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산 제품을 선호(특히 국내산 식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함)한다. 수입품의 경우 섬유 패션 및 신발류의 경우 이탈리아산, 내구 소비재는 독일산, 일부 생필품은 오스트리아산, 식료품의 경우 헝가리산을 선호한다. 높은 부가세(25%)로 인해 인근국 방문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국외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식품 등 외국 구매품에 대해 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1인당 구매 한도를 100달러에서 50달러로 삭감). 또한 최근 경기불황으로 팜플릿 등을 통해 가격을 비교한 뒤 저렴한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할인의 폭이 크고 선택의 폭이 넓은 KONZUM, Billa, Interspar, Plodine 등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매장의 보조수단으로 주로 이용됐지만 인터넷 기술발전과 소비자인식 변화에 따라 온라인 쇼핑의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비교가 쉽고 기존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온라인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크로아티아 국민에게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생각보다 높은 편으로(대다수 국민이 한국을 알고 있음) 주로 스포츠(월드컵 개최, 축구, 태권도 등), 한국산 자동차 및 전자 제품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 및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은 경쟁력 있는 가격에 높은 품질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중 자동차 시장을 보면 한국자동차는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을 가졌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현대차의 판매대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2018년 신차 판매량(11월 누적 기준)의 7.13% 현대차인 것으로 집계된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가 거래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수입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의사결정이 지연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재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크로아티아 기업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오랫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한 공급업체가 있으면 쉽사리 거래선을 전환하지 않는다. 가격 및 품질보다도 이러한 전통적인 거래 관계가 우선시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거래 초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보다 직접 크로아티아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호 방문을 통해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면 이후 거래 진행이 훨씬 수월하다.

크로아티아에서 L/C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외환 계좌와 국내 계좌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크로아티아에 기업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L/C개설을 위해서는 전체 L/C 금액 이상이 계좌에 잔고로 있어야 하며, 잔고가 있을 경우 L/C 개설에 3~5일이 소요된다. 반면, 은행 계좌에 잔고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L/C 개설을 할 경우에는 개설 은행이 L/C 개설 의뢰인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3~6개월 정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0.9%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계약 기간 관련, 연중 최대 대목은 크리스마스 전인 11월 15일~12월 25일 기간이며 이 기간 중의 판매를 위해 11월 초순에는 물품이 현지에 공급돼야 한다. 우리나라와의 거래 시에는 운송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9월 말이나 10월 초 선적이 이뤄져야 하나, 8월 말까지 대부분의 업체가 휴가를 가는 관계로 하반기 물품 구매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그 외 신학기 시작 전인 2월 중순, 하계휴가 시작 전인 6월, 부활절 전인 4월 초 등이 주요 구매 시즌으로 우리나라와의 거래는 이보다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적기가 된다. 크리스마스과 부활절 시즌엔 선물용품, 하계 휴가 전엔 레저/오락 용품, 신학기 시작 전엔 학용품 등이 주 구매 품목이다.

크로아티아 수입상들은 일반적으로 인근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공급업체들과 오랜 기간 동안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시장은 대부분 이들 4개 국가 제품이 평균 5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데, 이는 빠른 운송과 신속한 A/S 지원, 소량 다품종 수시 주문 가능, 별도의 대형 물류 창고 설치 불필요, 외상 거래 가능(30~60일) 등 협소한 크로아티아 시장에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유럽 공급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가격과 품질 모두 중요하지만, 유럽 공급업체가 수용하는 다품종 소량 주문, 운송 기간과 A/S 지원 문제, 대금 결제방법 등이 선결돼야 한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시장 규모가 작아 소량 주문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구매 습관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문이 많다.

현지 에이전트는 가능한 1개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복수 에이전트를 선정할 경우, 마케팅 활동 효과가 분산된다고 생각해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협소한 현지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단일 품목보다는 여러 품목을 종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첫 번째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진한 색상의 양복과 넥타이를 갖추도록 하며, 여성은 비교적 선택권이 자유로우나 지나친 노출은 삼가는 것

이 좋고, 역시 정장 차림이 무난하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사무 관리직이나 세일즈 직원의 경우는 양복 차림이 일반적이나 기술직이나 공장 근로자의 경우는 캐주얼 차림이 많다.

2) 인사

비즈니스 상담을 위해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악수하는 것이 관례이다. 특히 여성이 있을 경우 남성보다 여성과의 악수를 먼저 하는 것이 예의이며, 이 경우 여성이 손을 내밀 경우에 한한다. 특히 악수할 때 장갑을 끼고 해서는 안 되며 간단한 악수와 인사 후 명함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Mr. Mrs. 다음에 성을 붙여 부르는 관습이 있다. 여성이라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Ms.로 칭하는 것이 좋다. 크로아티아에서는 Miss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인식해 잘 사용하지 않으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Ms.로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로아티아 바이어와 첫 상담 시 자연스러운 이야기 주제로는 스포츠가 가장 무난하다. 크로아티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2위를 차지했고 루카 모드리치가 골든볼을 수상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3위 이후 20년 만의 쾌거로 온 나라가 추구로 들끓었기 때문에 축구 이야기로 화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이 외로는 핸드볼(2004년 올림픽 금메달, 2018년 유럽핸드볼선수권 대회 개최), 테니스(2018년 7월 ATP기준 Marin Cilic-세계 7위, Borna Coric-세계 21위), 격투기(Mr. Mirko Filipovic, 일명 CRO COP) 등에 관한 이야기도 좋다.

3) 선물

크로아티아에서 비즈니스 상담을 할 때 첫 상담부터 선물을 제공한다면 다소 의외로 생각할 수 있다. 현지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선물 제공을 비즈니스의 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USB 메모리 스틱 등 비즈니스 관련 저가의 물품은 크로아티아 바이어들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바 선물로 활용할 만하다. 또 한국을 상징하는 기념품이나 책 한 권 등 작은 선물은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는 편이다.

크로아티아 비즈니스 파트너의 가정에 초청받았다면 와인, 디저트(초콜릿 등), 꽃다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의 주류나 공예품 등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단, 꽃 중에서 장례식 때 쓰이는 국화나 연인들을 위한 빨간 장미는 가정 방문용 선물로는 삼가야 한다. 또한, 꽃송이 수는 유럽 전통에 따라 홀수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와인 선물은 한 두 병이 적당하다. 크로아티아에는 와인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갖춘 사람이 많으므로 품질이 뛰어난 고급 와인이나 외국산 와인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 업무상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만년필, 액자, 고급 열쇠 고리, 명함 지갑, 가죽 서류 가방 등이 무난하다. 반드시 유명 고급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카드는 크리스마스 1주일 전쯤 도착하도록 한다. 크로아티아인에게 줄 선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각종 선물, 장례식을 연상하는 브로치나 손수건, 애도의 표시인 검정색과 금색으로 포장된 선물, 불운을 상징하는 자숫빛 포장, 친구, 연인, 가족 간의 이별을 연상시키는 칼이나 기타 날카롭고 뾰족한 형태의 선물 등이다. 또한, 넥타이는 크로아티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크로아티아인들의 자부심과 품질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선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4) 약속

크로아티아 정부 관계자와 약속하기 위해서는 2~3주 전에 레터나 e-메일로 방문 약속을 잡아야 한다. 크로아티아 기업(바이어) 방문 시에는 1~2주 전에 e-메일, 팩스나 전화 등으로 희망 방문일시를 제시하고 확약 받으면 된다. 금요일 오후에는 가급적 비즈니스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오전 10시나 11시, 오후 2~3시에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속 시간에 대한 관념은 개인마다 다르나 다소 늦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이나 정부 기관을 방문 시에도 약속 시간보다 15~30분 정도 기다리다가 만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외국 방문자는 도착 후 다소 기다리더라도 약속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호텔이나 외부에서의 약속 시에는 교통 체증과 주차난으로 인해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가 꽤 있으므로 약속 시간을 어겼다고 불만을

제기하거나 기분이 상할 필요 없이 이해하려는 마음 가짐이 상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크로아티아 바이어를 직접 방문할 경우 7월~8월, 그리고 12월부터 1월 초 기간은 크로아티아인들의 대부분이 휴가를 즐기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대화 요령

크로아티아인들은 서면보다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 또 보통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크로아티아인들이 너무 부드럽게 돌려서 말을 하거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 것은 존중심의 표현이므로 반드시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도록 해야 하며, 크로아티아인들은 역설적이고 풍자적인 유머를 짓궂게 즐기는 경향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나 사람의 문제에 웃기도 한다. 또, 농담을 한다고 해서 목소리나 톤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크로아티아식 유머를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는 편이다.

상대와의 물리적 거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까이 서는 것은 좋지 않지만, 너무 멀리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에게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좋아하여 개인의 가족이나 출신지를 물을 수도 있으나, 돈이나 개인적 문제에 대해 떠벌리거나 동료의 험담을 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크로아티아 사회는 매우 정형화돼 있는 반면, 기업 문화는 개인적 접촉을 선호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크로아티아 사업가들은 외국어를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를 구사할 줄 알며, 최근 젊은 경영인들은 통역이 전혀 필요 없이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사업 파트너를 대할 때는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말하기 전에 통역사에게 미리 묻는 것이 관례적이다. 또, 첫 상담 시에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몇 가지 크로아티아 인사말 정도는 알아가는 것이 좋다.

6) 식사

특별히 금기시하는 음식은 없다. 대체로 독일, 이탈리아 및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음식과 비슷하지만 아드리아 해안을 끼고 있는 크로아티아는 해산물 요리가 다른 인근 유럽 국가에 비해 다양하며, 음식은 대체로 짜게 요리하는 특성이 있다. 크로아티아 비즈니스 파트너의 초청으로 가정에서 식사하게 될 경우 가급적 차린 음식은 깨끗이 비우는 것이 예의이다. 식사 중 트림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 크로아티아 전통 음식점이나 가정에서는 식사 주문 전이나 식사 전 독한 브랜드를 한 잔씩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이며, 식사 중에는 와인이나 맥주를 즐기는 편이다. 또한 크로아티아인은 자국산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은 바, 접대하기 전 와인에 대한 소개나 설명이 있을 경우 손님의 좋은 시음 결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7) 문화적 금기사항

크로아티아에서는 비즈니스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경우 다음과 같은 화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 정치 관련 및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질문: 크로아티아는 1991~1995년까지 당시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아픈 기억이 있으나, 현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해 내란이라고 언급하거나 자꾸 전쟁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한 언행으로 생략될 수 있다.
-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 크로아티아를 발칸 국가 또는 동유럽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한다. 크로아티아는 중남부 유럽에 속하며 발칸 반도상의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므로 함부로 발칸 국가로 분류하면 불쾌하게 생각한다.
- 종교 관련 화제 언급: 옛 유고연방은 종교적 분쟁(무슬림, 그리스 정교, 가톨릭)으로 인해 분할됐다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가급적 종교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구 유고연방 및 발칸 반도는 서로 종교가 다르고 종교 분쟁이 많았던 바, 종교 관련 화제는 민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KOTRA 조사 대행 및 시장개척단 참가 성공사례

국내 C사는 시장개척단 참가 이전에 시장성 및 바이어 조사를 위해 조사 대행 보고서를 의뢰해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이 이 회사 품목에 대한 조사 대행을 수행했다. 이로써 크로아티아 지반 구조가 암반 위주이고 터널 공사와 지하수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알았고, 이를 통해 많은 유력 바이어를 발굴, 조사한 바 있다. 조사된 바이어에게 시장 개척단 상담을 자연스럽게 연계해 10개 사와의 상담 주선에 성공했으며, 그 중 현재 1개 바이어로부터 2건의 오더를 받는 데 성공했다.

성공요인으로는 정확한 시장성 파악과 현재 수요를 가지고 있는 바이어 발굴, 상담 후 지속적인 무역관의 바이어 접촉을 통한 구매 일정과 구매 계획을 파악하고, 중간에서 지속적인 교신 지원과 협상 지원을 통해 상호 신뢰를 갖고 거래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적인 제품이 원래 기계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무역관이 중간에서 반송 및 경비 처리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C사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는 등 바이어에게 신뢰를 준 것이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KOTRA 지사화 사업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C사는 각종 산업용 철강 액세서리 수출업체로, 국내 및 중국 현지 공장을 통해 활발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2011년 2월 동 사는 자그레브 무역관의 협조 하에 현지 업체 R사와 4년간 후크 및 슬링 납품 계약을 성사시켰다. R사는 오랫동안 자그레브 무역관이 진행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인연을 맺고 있었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국내업체 C사와 계약에 합의했다. 하지만 첫 번째 선적 건부터 문제는 발생, 현지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은 고객들로부터 품질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 현지 고객까지 점차 줄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R사는 현지 고객 유지를 위해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산림지역에 동행해 줄 것을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에 요청했고 총 5차례 현장을 방문, 문제점 파악 및 고객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 국내업체 C사는 발 빠른 대응을 약속했으며, 추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제품 개발 및 생산에 돌입했다.

국내업체 C사와 현지업체 R사는 현지 납품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크로아티아 현지 생산품을 무상 제공했으며, 그 기간 동안 현지 고객이 원하는 제품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국내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제품에 하자가 발생, 2차 3차 클레임이 제기됐으며, 계약 파기에 이를 정도로 문제는 커져갔다. 그때마다 자그레브 무역관은 현장에서 고객들의 불만을 달래쳤고, 클레임 해결 의지를 더욱 확고히 심어주는 데 주력했다. 국내 업체 역시 현지를 방문, 클레임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무려 8개월 동안 신규 샘플 확인 5차례, 고객 면담 3차례, 끊임없는 이의제기 등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은 요구를 적절히 대처하면서 마침내 현지 고객들로부터 'OK' 사인을 얻어낼 수 있었다. 여전히 일부 품목에 대한 개선점이 남아있지만 현지 고객들도 이러한 자그레브 무역관과 국내업체의 제품 개선 의지 및 결과에 만족해하며 후속 오더 건에 대한 신뢰를 내비쳤다.

국내업체 C사는 지난 8개월 동안 발생했던 문제로 인해 심각한 금전적 손해 및 현지 수출 중단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제품 개선을 통해 언제든지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신념 하에 꾸준히 제품 개선에 몰두했고, 마침내 현지 수출용 표준 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향후 현지 공급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기타 관련 품목에 있어서도 수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 성공사례 2

우리나라 S업체는 각종 와이어로프 수출업체로, 국내 및 현지 공장을 통해 활발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2010년 2월 동 사는 본 무역관 협조하에 현지업체 R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크로아티아 산림청 입찰에 참여하게 됐다. 국내업체가 비리와 부패관행이 있는 크로아티아 정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S업체는 다이너마이트로 이미 정부조달에 참여하고 있던 현지업체 R사의 라인을 통해 산림청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들의 가격을 확보해 '노마진'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해 4년 입찰 계약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철강 국제가격 인상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산림청은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반대하며 2010년, 2011년 말 두 차례나 계약을 파기시키고 말았다.

어차피 그들을 상대로 소송 및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은 '다음은 없다'라는 것과 다름없었고 극심한 현지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조달'보다 빠른 Cash 확보처도 없었다. 우리 S사와 현지의 R사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의 제기보다 그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처했고, 또 찾아올지 모르는 계약 파기지만 오늘도 R사가 원하는 제품을 S업체는 납품하고 있다.

◦ 성공사례 3

국내업체 C사는 기능성 원료 화장품 수출업체로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독자 개발한 기능성 원료 물질 화장품 제조·판매사다. C사는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의 협조하에 업체 F사를 통해 크로아티아 132개 DM소매점과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F사는 그동안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다수의 국산 화장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회사이다. 크로아티아 일반 소비자들도 유럽에 진출한 국산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기에, F사는 유럽에 출시되지 않은 차별화된 제품의 유통을 희망했다. 이에 무역관은 독자 기술로 개발된 기능성 원료 화장품을 F사에 제안했으며, 바이어는 자체 보유 고객들을 대상으로 커스터마이징 및 대규모 유통 가능성을 점검한 후 C사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 계약이 성사됐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사증)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 양국 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01년 체결된 바 있어 일반여권소지자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아닐 시 90일 이내로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해 사증이 필요하지 않다. 유학, 상용, 취업, 취재 등의 목적으로 크로아티아를 방문한 경우에는 사전에 크로아티아 외교공관(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주일본 크로아티아대사관이 한국의 업무까지 겸임하고 있음)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비자 종류

여행비자(3개월)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 시 특별한 사증 없이 3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비자(최장 2년)는 현지 업체 혹은 한국 지사에 근무 시 고용 허가원에 의해 발급이 가능하며, 보통 1년 기간의 비자를 발급해준다. 학생비자(학교 등록 기간)는 현지 학교에 입학할 시 발급이 가능하다.

3) 비자 취득 시 구비서류

비자를 취득 시 비자 종류의 따라 구비 서류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하기와 같다.

- 출생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증
- 범죄 경력 증명서
- 거주 증명서(크로아티아 내)
- 거주지 계약서
- 컬러 사진 2매(30X35mm)
- 비자 신청서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의 경우는 입학증 및 학생증,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등이 더 요구되므로 이 점도 유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 여행 증명서 또는 여행목적, 체류숙소, 경비관계 보증, 여행 후 자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보증, 여행방법 등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요구될 수 있다. 한국 내 거주하는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사증발급 인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발급받은 후, 발급된 사증발급 인정서를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송부한다. 사증발급 인정서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 인정서와 함께 여권, 사증 발급 신청서, 최근에 찍은 여권용 규격 사진 1장, 체류자격에 따른 구비서류를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환산금액 10,000유로 이상의 현금 또는 수표 반입출시 신고 필요

2) 휴대품 면세한도

○ 휴대물품의 정의

-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행자가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신품 또는 중고 물품이다. 직업용 품은 장치 또는 설치가 필요한 기계류를 제외되고 통상적으로 운반이 가능해야 한다.

○ 면세 한도금액

- 항공, 선박 입국 시 약 430유로(현지화 3,200쿠나)
- 육로 입국시 약 300유로(현지화 2,200쿠나)
- 만 15세 미만 여행객: 약 150유로(현지화 1,100쿠나)
- 향수, 커피, 차, 휴대용 전자기기 포함
- 기타 개인 사용물품

○ 휴대품별 통관기준

- 술: 알코올 22% 초과 주류 1리터 또는 22% 이하 주류 2리터(포도주, 맥주 제외), 일반 포도주 4리터, 맥주 16리터
- 담배: 궤련(cigarettes) 200개비 또는 엽궤련(cigarillo) 100개비 또는 시가(cigars) 50개비 또는 엽초(tobacco) 250g
- 향수: 향수 50ml 또는 화장수 250ml
- 의약품: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 지참 시 최장 1개월분의 개인 의약품 휴대 가능
- 항정신성의약품은 개인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처방전을 소지하여 최대 5일분까지 휴대 가능
- 식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등은 수입 불허

○ 반입불허품목

- 불법 마약류, 여행에 필요한 분량 이상의 약품,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워싱턴협약(CITES)에 의해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 기타 유의사항 : 출국시 세금 환급은 물품 구입액이 최소 약 100유로(현지화 740쿠나) 이상일 경우 가능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385-1-4821-282
주소	Ksaverska cesta 111 a-b,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hr-ko/index.do

〈자료원 : 주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정부

전화번호	+385-1-4569-222
주소	Trg svetog Marka 2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s://vlada.gov.hr

○ 경제부

전화번호	+385-1-6106-111
주소	Ulica grada Vukovara 78,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s://www.mingo.hr/

○ 외교부

전화번호	+385-4569-964
주소	Trg N.S. Zrinskog 7-8,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www.mvep.hr/

○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385-1-456-1555
주소	Rooseveltov trg 2,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s://www.hgk.hr/

◦ Jutarnji list(언론사)

전화번호	+385-1-610-3100
주소	Koranska 2,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s://www.jutarnji.hr/

◦ Vecernji list(언론사)

전화번호	+385-1-6300-605
주소	Oreskovicева 6H/1 1001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s://www.vecernji.hr/

<자료원 : 크로아티아 정부 및 각 언론사 홈페이지>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6.54쿠나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5.35
2	식품	비빔밥	1인분	13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0.7
4	식품	신라면	1봉지	2.14
5	음료	커피(아메리카노)	1잔	1.68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76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92
8	의료	항생제	12정	1.53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1.53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6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53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0.7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47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15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5.35
16	여가	담배(말보로라이트)	1갑	4.59
17	여가	소주(한식당 내 판매 최저가)	360ml	14.53
18	임금	최저임금/월	법정최저	573.4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19875
20	금리	콜금리	%	0.31

<자료원 : NUMBEO,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크로아티아에서는 현지화인 쿠나(Kuna)가 통용되므로, 달러화나 유로화를 쿠나로 환전해야 한다. 주요 은행, 시내 환전소를 이용하여 환전할 수 있으며, 살 때 기준으로 1달러에 6.52쿠나, 1유로에 7.37쿠나(2018.12월 기준) 정도이다.

관광 성수기에 일부 관광지에서 숙박비 등을 유로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쿠나 외 화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환전방법

자그레브 시내 및 주요 관광지에 환전소가 다수 존재해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 단, 일요일은 대부분 휴점하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는 사용 가능하나, 일부 커피숍, 식당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자그레브 시내에는 주차난이 심하며 크로아티아 운전자들은 성미가 매우 급하고 과속 운전과 양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시내 좁은 도로를 트램(전차)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 시 더욱조심해야 된다. 자가용 운전 시 외국인 은 녹색의 차량번호판을 부착하게 돼 있고, 책임보험은 가입이 의무적이다. 운전 시에는 안전벨트 착용해야 하며,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정된 장소에 주차 및 정차가 필수이다.

자그레브 시내의 경우 전차(Tram),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크로아티아 내에서 지역 간 이동 시에는 철도가 도로보다 기반 시설이 부족한 편이므로 기차보다는 버스를 이용할 때 시간이 덜 소요되고 더 편리하다.

버스

크로아티아는 버스연결망이 광범위하고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기차보다 편리하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체증이 심하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시외버스 및 외곽지역 버스의 경우 휴일에는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인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시간표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택시

자그레브의 택시는 우리나라나 뉴욕 대도시처럼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는 것보다는 전화를 통해 택시를 부르는 콜택시 시스템이다. 따라서 택시들이 항상 대기해 있는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면 길거리에서 택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전화를 통해 택시를 부르는 편이 낫다. 콜택시 전화번호는 060800800, 1414, 1212 등으로 전화로 부르면 5분 내로 오며, 일반 택시요금과 동일하다.

도심 외곽에서는 택시 잡기가 어려우며, 택시기본요금은 1.53달러 정도로,비싼 편이다. 또한 동일 거리임에도 택시 회사마다 요금이 크게 차이가 나고, 택시기사와 이야기해서 금액을 정할 수도 있어 미터기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다. 최근에는 우버 사용이 보편화되어 자그레브, 스플릿 등 대도시에서는 우버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전차(Tram)

전차(Tram)는 주요 시내 교통수단으로 대부분의 시내를 관통한다. 전차 1회 요금은 10쿠나(약 1,800원, 6세 이하 어린이 무료), 30분 이용권 요금은 4쿠나이며, 동일한 방향의 노선을 연결해 전차의 복수 승차가 가능하며, 최초 탑승 후 90분 동안 유효하다. 카드는 보통 정류장 근처에 위치한 iNovine이라는 신문 가판대에서 판매한다. 전차에 타면 바로 카드 기계에 카드를 대서 도장을 받아야 하며(우리나라 버스 탈 때와 같은 원리, 카드가 아닌 티켓의 경우 기계에 티켓을 넣어 펀칭), 무임 승차의 경우 높은 벌금을 받게 된다.

외곽지역의 경우, 전차가 내리는 지역에서 바로 버스가 연결돼 있어 불편함이 없으나, 휴일에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일 경우도 있으니 미리 시간표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야간 노선은 1회 이용에 15쿠나이다. 1일 정기권은 30쿠나, 3일권은 70쿠나이므로 필요에 맞추어 구매하면 좋다. 다만, 트램기사에게 직접 구매할 시, 전차 1회권(15쿠나)만 구입 가능하다.

다. 통신

핸드폰

이동전화는 유럽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GSM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에는 3개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영업 중에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이동통신사업자는 독일계 크로아티아 텔레콤(T-HT)의 계열 회사인 T-Mobile이 시장 점유 46%(2017년 3분기, BMI)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오스트리아 MOBILKOM AUSTRIA GROUP이 100% 소유한 VIPnet이 시장점유율 37%를 차지, 해당 2개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5년도 새롭게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한 TELE2는 스웨덴 기업이 투자한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이 17% 정도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의 경우, 현지에서 SIM card 구매 후 전화번호를 발급받고, 데이터 3G, 음성 2시간, 문자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선불(pre-paid) 방식으로 100쿠나 정도가 든다.

인터넷(와이파이)

모뎀 무선 방식 등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속도는 빠른 편이며 대부분의 시내 음식점 카페 등에서 무선인터넷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시 설치할 때까지 길게는 2개월 이상 소요된다.

라. 관광명소

◦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Old City of Dubrovnik)

도시명	두브로브니크
주소	Poljana Paska Milicevica, 20000, Dubrovnik
명소소개	두브로브니크는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다. 성벽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옛 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됐고, 조지 버나드 쇼는 일찍이 '지상 낙원을 찾는다면 두브로브니크로 가라'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왕좌의 게임'과 영화 '스타워즈' 등의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Plitvice Lakes National Park)

도시명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주소	HR 53231 Plitvicka Jezera
운영시간	- 겨울(10월 마지막주 일요일~3월 마지막주 토요일) : 08:00~16:00 - 봄(3월 마지막주 일요일~5월 31일) : 08:00~19:00 - 여름(6월 1일~8월 20일) : 07:00~20:00 - 가을1(8월 21일~9월 30일) : 07:00~19:00 - 가을2(10월 1일~10월 마지막주 토요일) : 08:00~18: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19.5ha에 달하는 숲 속에 16개의 청록색 호수가 크고 작은 폭포로 연결돼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1979년부터 유네스코 문 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총 10가지의 트래킹 코스가 있으며 각 코스에 따라 2~8시간이 소요된다.

〈자료원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녹트르노(Nokturno)

도시명	자그레브
전화번호	+385-1-4813-394
주소	Skalinska ul. 4, 10000, Zagreb
가격	20~150쿠나
영업시간	평일 : 08:00~24:00 금, 토 : 09:00~01:00 일요일, 휴일 : 08:00~24:00
휴무일	없음
소개	가격대비 음식이 우수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도 많이 찾는 대중적인 식당
비고	처음에는 음식이 짭 수 있으므로 주문할 때 소금 양 조절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 소프라(Sofra)

도시명	자그레브
전화번호	+385-1-4111-621
주소	Radnika cesta 50, 10000, Zagreb
가격	50~200쿠나

영업시간	월요일: 10:00~18:00 화요일~토요일: 10:00~01:00 일요일: 12:00~18:00 휴일: 12:00~18:00
소개	보스니아 전통음식으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집이며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음

- 한국식당

o 크로케이(Cro.k)

도시명	자그레브
전화번호	+385-1-4819-525
주소	28/1, Horton Place, Colombo 7
가격	80~100쿠나
영업시간	11:30~23:00
휴무일	월요일
소개	자그레브 옐라치치 광장 근처로 접근성이 좋으며 찌개, 전골, 구이 등 종류가 다양함

o 엄마식당(OMMA 식당)

도시명	자그레브
전화번호	+385-99-467-0701
주소	Unska ul. 2B, 10000, Zagreb
가격	80~100쿠나
영업시간	11:00~21: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자그레브 대학교 옆에 위치한 식당으로 현지 입맛에 맞춰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o 더블트리(Double Tree by Hilton Zagreb)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Ulica Grada Vukovara 269a, 10000 Zagreb
전화번호	+385-1-6001-900

홈페이지	https://doubletree3.hilton.com/en/hotels/croatia/doubletree-by-hilton-hotel-zagreb-ZAGCRDI/index.html?WT.mc_id=zELWAKN0EMEA1DT2DMH3LocalSearch4DGGenericx6ZAGCRDI
숙박료	600~900쿠나
소개	자그레브 시내 비즈니스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헬스장, 수영장, 터키식 목욕탕, 핀란드식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에스플라나데 자그레브(Esplanade Zagreb)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Ul. Antuna Mihanovica 1, 10000, Zagreb
전화번호	+385-1-4566-666
홈페이지	https://www.esplanade.hr/hr/mainpage.html
숙박료	1060~1200쿠나
소개	자그레브 기차역 인근에 위치한 5성 호텔이다. 파리 이스탄불을 잇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탑승객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1925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호텔이다.

○ 셰라톤(Sheraton)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Ul. kneza Borne 2, 10000, Zagreb
전화번호	+385-1-4553-535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zagsi-sheraton-zagreb-hotel/?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
숙박료	740~1100쿠나
소개	자그레브 기차역 및 자그레브 시내 중심가와 약 5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 5성 호텔이다.

- 게스트하우스

○ 러브크로아티아(Love Croatia)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Mesnicka ulica 5, Gornji Grad, 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91-6200-800
홈페이지	http://www.lovecroatia.co.kr/
숙박료	약 27유로
소개	엘라치치 광장 근처로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좋음.

○ 돌라츠 게스트 하우스(Dolac Guest House)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Opatovina 14,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1-5585-479
홈페이지	https://dolac.co.kr/
숙박료	약 90유로(1객실 2인 기준)
소개	자그레브 시내 유명 재래시장인 돌라츠시장 인근에 위치,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 및 시설이 좋음.

○ 모이돔(Mojdom)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Ul. Ivana Tkalčica 24, 10000, Zagreb
전화번호	+385-99-444-7878
홈페이지	http://www.mojdom17.com/
숙박료	약 25유로
소개	엘라치치 광장 근처 카페 및 음식점 거리인 트칼치차에 위치

사. 치안

치안상황

크로아티아는 현재 남동유럽에서 치안 상황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의 급증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경범죄, 소매치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및 렌터카 업체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과실유무를 판단하며, 교통법칙금이 부과될 시 현장에서 즉시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 경찰: 192
- 도로 긴급지원서비스: 1987

2) 여권/지갑 분실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분실 및 개인소지품 분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분실 시 대사관으로 연락해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 대사관 연락처: +385-1-4821-282
- 대사관 긴급연락처(근무시간 외): +385-91-2200-325

3) 응급 전화번호

응급상황 발생시 우선적으로 대사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시중 약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 처방전을 요구하나 간단한 소화제, 감기약, 아스피린 등은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하다. 이외 현지 긴급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 화재: 193
- 구급차: 194
- 긴급상황 신고 및 구조요청: 112
- 해양사고 신고 및 구조요청: 195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 외국인용 주택 임차가 어렵지 않은 편임.
-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주택을 임차하며 통상 1개월분의 임차료를 소개 비용으로 지불
- 계약 시 유의사항
 - 가능한 보증금 없이 계약하고 상호 1~2개월 전 통보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이 바람직
- 입주 시 유의사항: 입주 전 상태점검 필요
 -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관련 필요 시 사전 명문화 필요
- 가구 등 비품 포함 여부
 - 대부분 부엌시설, 냉장고, 전기오븐, 그릇세척기, 세탁기 등 및 기본 가구가 갖추어진 경우가 많음.
- 주택 관련 보험제도
 - 화재, 도난, 누수 등은 일반적으로 임대주가 부담하나 주택 내 비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보험 가입
-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에 비싼 편이므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

전화

송수신 상태는 양호하나 이동전화의 경우 외곽도로, 고속도로 지역 등 통화 불가능한 지역이 많으며, 도시 내에서도 회선 수 부족으로 통화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요금 수준은 국제전화의 경우, 한국에 비해 50% 이상 비싼 수준이며 일반 전화 설치 시 초기 설치비용은 회선당 600쿠나(약 100달러)이며, 전화 회선을 반환하더라도 해당 설치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전화 회선 설치 신청 후 설치비를 납부하고도 1~2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전화 설치 작업이 오래 걸린다.

전압/플러그

전기 규격은 50HZ, 230V이며 한국에서 사용한 전기 코드도 현지 전기 콘센트와 호환된다.

식수

현지의 수도물에는 석회가 많이 포함돼 있어 미네랄 워터를 사서 마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가스가 있는 경우와 가스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야 한다.

호텔에서의 미네랄 워터는 비싸므로 호텔 체크인 시 인근 슈퍼에서 미네랄 워터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자동차 공식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중고차의 경우도 공식 딜러에게 구입하는 것이 다소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검증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 크로아티아는 아직 수동변속 차량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자동변속 중고차는 구입하기가 다소 어려운 편이다.

한국과 상이한 자동차 검사 기준으로 인해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가지고 올 경우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 자동차 운전석은 한국과 같이 왼쪽에 위치
- 현지 구입 시 각종 세금 등으로 차량 가격이 비싼 편이고 차량 구매 후 인도 시까지 통상 약 2개월 소요

차량가격

폭스바겐, 르노, 스코다가 가장 대중적인 자동차이며, 폭스바겐 골프모델 가격은 약 21,400 달러 수준이다. 중고차의 경우 하기 사이트에서 매물을 비교할 수 있다.

- 참고 중고 자동차 매매 사이트
 - <http://www.oglasnik.hr>
 - <http://www.auti.hr>
 - <http://www.vidiauto.com>
 - <http://www.mojauto.net>
 - <http://www.njuskalo.hr/auti>
 - <http://www.neostar.hr>
 - <http://www.trcz.hr>
 - <http://www.saz.hr>(최대 자동차 거래 사이트, 실제로 시장에 가서 차량 확인 후 구매 가능)
- 자동차 매매 관련 잡지
 - AUTO BLIC: <http://www.blic.rs/Auto>
 - AUTO KLUB: <http://www.jutarnji.hr/autoklub>

운전면허 취득

1) 크로아티아 자동차운전면허 교환 발급 요건

- 크로아티아 체류허가(6개월 이상) 소지
- 유효한 한국 여권 소지
- 유효한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종별 무관)

2) 구비서류

- 교환(발급) 신청서
- 크로아티아 체류허가(6개월 이상)
- 한국 여권
-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번역본(공증본 또는 인증본)
 - 면허증 번역의 경우, 주크로아티아 대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 크로아티아 내무부 운영 보건소, 지자체 운영 보건소 및 일부 사립 병원에서 발급 가능함.
- 크로아티아 내무부 운영 보건소(<http://www.dzmup.hr/default.aspx?id=9>) 및 지자체 운영 보건소(<http://dzz-centar.hr/medicina-rada/medicina-rada>)에서 정보 확인 가능
- o 컬러사진 1매(3.0cm*3.5cm)
- o 수입인지세 70쿠나
- o 면허발급 수수료(일반: 151쿠나, 급행: 200쿠나, 긴급: 450쿠나)

3) 담당기관

- o 크로아티아 내무부 산하 교통경찰
 - 자그레브 제1교통경찰서(01-6333-410, Heinzelova ulica 98, 10000 Zagreb)
 - ※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교통경찰서에 문의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Hrvatska narodna banka) - <http://www.hnb.hr>
- 자그레바치카 은행(Zagrebaka banka) - <http://www.zaba.hr>
- 스플리트스카 은행(Splitska banka) - <http://www.splitskabanka.hr>
- 크로아티아 재건·개발은행(Hrvatska banka za obnovu i razvitak) - <http://www.hbor.hr>
- 크로아티아 우체국 은행(Hrvatska potanska banka) - <https://www.hpb.hr>
- 상업 은행(Privredna banka) - <http://www.pbz.hr>
- 라이파이젠 은행(Raiffeisen banka) - <http://www.rba.hr>
- 에르스테 은행(Erste banka) - <https://www.erstebank.hr>

계좌 개설방법

크로아티아 내 은행들 중 대형 은행에서 외국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 시외환 계좌와 현지화 계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송금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계좌에 외환만 있어도 예금 인출 시 자동으로 현지화로 환전해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단, 계좌 이체 등에 수수료가 비싼 편이며 여행자 수표도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지 않고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o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Zagreb

도시명	자그레브
커리큘럼	영국 학제를 따름

학비	- 유치원 : 5,600 유로 - 초등학교(Grade 1~6) : 11,200 유로 - 중학교(Grade 7~9) : 12,300 유로 - 고등학교(Grade 10~12) : 13,400유로 - 입학비 : 7,700쿠나
홈페이지	https://www.britishschool.hr
비고	2013년부터 자그레브 명문 사립 초등학교인 Kreativni razvoj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설립되었음

◦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of Zagreb

도시명	자그레브
커리큘럼	비영어권 학생은 ESI 을 수강하거나, 영어/수학 능력평가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학비	- 유치원 : 6,470 유로 - 초등학교(Grade 1~5) : 15,310 유로 - 중학교(Grade 6~8) : 16,400 유로 - 고등학교(Grade 9~12) : 16,890 유로 - 입학금 : (유치원) 500 유로, (초~고등학교) 1,500 유로
홈페이지	http://www.aisz.hr

〈자료원 :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 Privatna klasična gimnazija

도시명	자그레브
커리큘럼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중시함.
학비	33,600쿠나(약 4,500유로)
홈페이지	http://gimnazija-privatna-klasicka-zg.skole.hr/
비고	크로아티아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함.

마. 병원

◦ Klinički bolnički centar Zagreb(KBC Zagreb)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Kispaticeva 12, 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1-2388-888
진료과목	종합병원

○ Klinicki bolnicki centar "Sestre milosrdnice(KBC Sisters of Mercy)"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Vinogradska cesta 29, 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1-2902-444
진료과목	종합병원

○ Klinicka bolnicka "Dubrava(KB Dubrava)"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Avenija Gojka Suska 6, 10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1-2902-444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대사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아레나몰

주소	Ul. Vice Vukova 6,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s://www.arenacentar.hr/hr/
비고	자그레브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서 영화관, 음식점 등이 함께 입점해 있음.

○ 아베뉴몰

주소	Avenija Dubrovnik 16, 10020, Zagreb
홈페이지	http://avenuemall.hr/
비고	아레나몰보다 규모는 작으나, 역시 영화관, PC방,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어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쇼핑몰임.

- 식품점

○ 돌라츠 시장(Dolac Market)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Dolac 9, 10000, Zagreb, Croatia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자그레브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재래시장으로 관광명소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들도 애용한다.

◦ 콘쑈(Konzum)

도시명	크로아티아 전역
취급 식료품	대형 쇼핑몰로서, 모든 식료품 취급
비고	크로아티아 대표 마트

- 기타 편의시설

◦ Riverside Golf Zagreb(골프장)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Jadranska ul. 6,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www.riversidegolf.hr/
소개	자그레브 소재 골프장

◦ Bowling Centar Zagreb(볼링장)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Trg Drage Iblera 10,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s://www.bowling-zagreb.hr/
소개	자그레브 시내 소재 볼링장

◦ Sporting Gym

도시명	자그레브
주소	Nova ves 17, 10000 Zagreb, Croatia
홈페이지	https://www.orlandofit.hr/en/
소개	자그레브 시내 소재 헬스장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19-01-01	

주공헌 대축일	2019-01-06	
부활절	2019-04-21	
부활절 후 월요일	2019-04-22	
노동절	2019-05-01	
그리스도 성체 축일	2019-06-20	
반전체주의의 날	2019-06-22	
건국 기념일	2019-06-25	
추수 감사일	2019-08-05	
성모 승천 대축일	2019-08-15	
독립 기념일	2019-10-08	
모든 성인의 날	2019-11-01	
성탄절	2019-12-25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2019-12-26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자그레브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adnicka cesta 52/VIII, 10000, Zagreb, Croatia
- 전화번호 : +385 1 4815 102
- 이메일: kotra@koreatrade.hr
-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KBC/zagreb>

공항-무역관 이동

무역관은 Green Gold 빌딩 R2 섹션 8층에 위치해 있으며 택시 혹은 버스, 트램을 이용해 내방할 수 있다.

- 택시
 - 약 200쿠나(약 30달러)를 지불하면 공항 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는 공항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약 30분이다.

- 버스-트램
 - 공항에서 공항버스(30분 간격으로 운행)를 이용해 자그레브 시내 버스터미널(Autobusni Kolodvor)에서 하차한 후, 트램(번호 2; Savisce행)을 이용해 무역관 인근의 Radnicka역에서 하차한다(1정거장, 약 2분 소요). 약 100m 정도 거리에 자그레브 무역관이 위치한 Green Gold 빌딩이 있다. 또는, 하차 후 Avenija Marina Drzica 거리를 따라 남쪽으로 약 5분간 도보로 이동해도 된다(Double Tree Hotel by Hilton 바로 옆에 위치).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